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08

발의연월일: 2025. 1. 15.

발 의 자 : 임오경 · 김재원 · 김윤덕

이용우 · 조계원 · 박수현

윤호중 • 한병도 • 강유정

이기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(살생물제)이 포함되어 있음.

그런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하고, 이를 위해서 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함.

이에 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7조).

법률 제 호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4. "보존처리제"란 국가유산의 가치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행하는 보존처리 등의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.

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보존처리제를 사용하는 방제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1의3. (생 략)	1. ~ 1의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의4. "보존처리제"란 국가유산
	의 가치유지 및 회복을 위하
	여 행하는 보존처리 등의 국
	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물질
	및 제품을 말한다.
2. ~ 17. (생 략)	2. ~ 17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	제7조(국가유산수리등의 기준 보
급)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	급)
수리등을 적절하게 시행하기	
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	
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보존처리제를 사용하는 방
	제에 관한 사항
<u>4</u> . (생 략)	<u>5</u> . (현행 제4호와 같음)